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15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0.

김 장 관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김장관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법령상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언을 정비하고 행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·처분의 위임 대상 및 위임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의 승인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
- 안 제28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에서는 제명 변경과 행정부의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
- 안 제56조 및 별표 제4호에서는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
**□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**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·처분 업무가 관계 법령과 실제 집행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고 용어 및 불필요한 문언을 정비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원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김장관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06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0. 10.

발 의 자: 김장관, 도하석, 김정희  
남현주, 임미연

## 1. 제안이유

- 법령상 부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언을 정비하고 행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 통일성 확보 및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관리·처분 사무의 위임 대상 및 위임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의 승인 주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3조)
- 제명 변경 및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함(안 제28조제5항제3호, 제38조 제1항제5호)
- 장애인 관련 용어 등 문언을 정비함(안 제56조, 별표 제4호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1

나. 관계법령 : 붙임 2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4조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
-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
- 다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재산소재지 소속행정기관장(산하행정기관을 포함한다)”을 “재산관리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총괄재산관리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5항제3호 중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5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별표 제4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“장애자용”을 “장애인용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

4. ~ 8. (생략)

⑥ (생략)
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구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

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 다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 
-----  
국가보훈부장관-----  
-----
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

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만, 1급, 2급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수 있다.

[별표] 청사·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

1. ~ 3. (생략)
4. 보건소

구분	실명	면적기준	
		군보건소	통합시 보건소
진료 활동	a	(생략)	
		장애자용 화장실	4.86
(생략)			

[별표] 청사·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

1. ~ 3. (생략)
4. 보건소

구분	실명	면적기준	
		군보건소	통합시 보건소
진료 활동	a	(현행과 같음)	
		장애인용 -----	---
(현행과 같음)			

**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**

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 재산을 관리·처분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“재산관리관”이라 한다.

③ (생략)

**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명 변경)**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90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**□ 정부조직법**
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.

1. ~ 8. (생략)

9. 국가보훈부

10. ~ 19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**□ 장애인복지법**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~ ④ (생략)